고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719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라 한다) 제7조제 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 및 변경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현황

구분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위치	관할 시·도
1	경기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양시 평촌대로, 흥안대로, 시민대로, 안양로 일원	경기도
2	인천 구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일원	인천광역시
3	인천 송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	인천광역시
4	인천 영종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영종동, 중산동 일원	인천광역시
5	인천국제공항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	인천광역시
6	울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일원	울산광역시
7	대구 동성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대구광역시 중구 일원	대구광역시
8	경북 경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경주시 보문관광단지 일원	경상북도 경주시
9	경남 사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경상남도 사천시 일원	경상남도
10	전남 해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산이로 일원	전라남도
11	경기 판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변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및 수정구 일원	경기도

구분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위치	관할 시·도
12	강원 강릉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변경)	강릉시 일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13	경북 도청 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변경)	경북도청 신도시 일원 (예천복합커뮤니티센터 ~ 하회마을)	경상북도
14	제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변경)	제주시청-서귀포1청사 구간 일원	제주특별자치도
15	충청권 광역교통망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변경)	청주공항~오송역~세종터미널~ 반석역~카이스트 구간 일원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16	서울 청와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정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복궁 및 청와대 일원	서울특별시
17	서울 여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정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및 국회 내부 일원	서울특별시
18	충남 내포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정정)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군 내포신도시 일원	충청남도
19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정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일원	제주특별자치도
20	대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정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성군, 서구 일원	대구광역시
21	서울 청계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정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성동구 (청계천로) 일원	서울특별시

경기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 명칭 : 경기도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관할 시·도 : 경기도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 또는 연장
1	안양시 평촌대로, 시민대로 일원 / 시청사거리 ~ 비산체육공원	3.4km
2	안양시 시민대로, 흥안대로, 안양로 일원 / 인덕원역 ~ 범계역 ~ 안양역	7.2km
	계	10.6km



-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 ㅇ 지정목적
 - 대중교통수단이 제공되지 않는 심야/새벽 시간대나 대중교통 사각지역에 자율주행버스 공급을 통해, "언제나 어디서나"시민의 이동성이 보장되는 스마트교통도시 구현
 -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서비스의 도시실증과 기존 운수서비스업과의 발전적 상생협력 도모
 - 지정기간 : '23. 12. 5.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 ㅇ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 ㅇ 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서비스
 - 대중교통 사각지역 및 취약시간대 해소를 위하여 기존 버스운영 방식을 준용하여 고정노선 기반의 자율주행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주간 : 안양시청-비산체육공원, 야간 : 안양역-범계역-인덕원역)
- 시범은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은행 지원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자율주행 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주행관제센터, 스마트도로인프라, 자율주행관제플랫폼 구축
 - ITS 인프라를 통해 신호, 돌발상황, 불법주정차 정보연계 등 자율협력주행 지원 및 CCTV를 활용한 자율주행차량 운행·관제 고도화
 - 안전한 자율주행 운행을 위한 노면표지, 버스정류장, 도로표지판 신설 등 도로 환경 개선
 - 자율주행 테스트랩 구축 및 산·학·연, 민간에 제공(관제센터 인프라, 데이터)하여 기술 개발/실증 지원
 - 시범운행지구 운영을 통한 자율주행 선도기업 유치 및 산업 활성화
 -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차고지 및 충전소 제공(자율주행관제센터 내)
 - 자율주행관제센터(스마트도시통합센터) 내 홍보관을 구축하여 자율주행과 연계된 홍보 및 시연
- ㅇ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

ㆍ 허가조건

- 운행 예정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가능영역(Operation Design Domain, ODD)이 본 시범운행지구의 운행 구간 및 운행 형태에 적합해야 함
- 구간별 제한속도(50km/h)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며 운행할 수 있어야 함
- 운행시 운전자, 안전관리자는 사전 승인을 받은 자이어야 하며,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이 상시 탑승
- 경기도의 버스, 택시 등 고려한 적정 요금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 특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악천후, 비상상황 등 자율주행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거나 주행 상황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경우 안전요원이 개입하여 수동으로 운전해야 함
- 자율주행자동차 및 시범운행지구 관련 법령, 행정규칙, 경기도 조례를 준수해야 함
- 여객에게 운수사업자, 요금, 노선 등의 정보를 알려야 하며, 여객이 요청할 경우 요금 결제내역을 제공해야 함
- 경기도, 안양시에서 제공하는 안전관리 매뉴얼, 안전관리 규칙을 준수해야 함
- 경기도, 안양시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 영업장 출입을 허용하고 자동차 운행실적 등 한정운수 면허와 관련된 자료(시범운행지구 성과보고서 작성시 필요 자료 등) 요청 시 즉시 제출해야 함
- 월별/연간 운행실적 등 경기도, 안양시가 요청하는 사항들에 대해 협조해야 함
- · 허가대수의 상한 : 총 2대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유상서비스	안양시 관내 자율주행시내버스	OFIL
	(주간 : 안양시청-비산체육공원, 야간 : 안양역-범계역-인덕원역)	2대

- 기타 : 여객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허가 신청 절차, 안전관리 규칙 등 본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청, 안양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고시 공지 예정
-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홈페이지 : 경기도청(www.gg.go.kr), 안양시청(www.anyang.go.kr)
 - 문 의 처 :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031-8008-5721), 안양시 스마트도시정보과(031-8045-5350)

인천 구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인천 구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관할 시·도 : 인천광역시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 또는 연장
1	인천광역시 관내(구월로 / 시청역 사거리~석천 사거리)	0.58km
2	인천광역시 관내(남동대로 / 석천 사거리~남동경찰서 사거리)	1.6km
3	인천광역시 관내(인하로 / 터미널 사거리~남동경찰서 사거리)	0.56km
4	인천광역시 관내(예술로 / 터미널 사거리~시청역사거리)	1.5km
	계	4.24km



-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 ㅇ 지정목적
 - 인천광역시청 일원에 새로운 교통수단을 공급하여 정주여건 개선
 - 기 구축된 자율주행 인프라를 활용한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
 - 신규 교통수단 공급을 통한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
 - 자율주행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 선도지역 도약
- 지정기간 : '23. 12. 5.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 ㅇ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 ㅇ 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서비스
 - 구월로 → 남동대로 → 인하로 → 예술로를 순환하는 도심순환형 자율주행 서비스
 -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내 및 정류장 표지판, 필요 시 도로노면표시 등
 - 시범운행지구 안전 관리를 위한 분야별 계획 수립
 - ㅇ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
 - · 허가조건 및 특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
 - 기타 여객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허가 신청 절차, 안전관리 규칙 등 본 시험운행지구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고시·공지 예정
 - · 허가대수의 상한 : 총 4대('2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도심순환형 자율주행셔틀	도심에서 정해진 노선을 따라 순환하여 운행하는 셔틀 서비스	4대

- * 세부사항은 유상운송특례 발급 전 사전협의를 통해 조율
-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홈페이지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032-440-4583)

인천 송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 명칭 : 인천 송도(센트럴파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관할 시·도 : 인천광역시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 또는 연장
1	인천광역시 관내(인천타워대로 / G타워 앞 사거리~인천대입구역 사거리)	0.85km
2	인천광역시 관내(테크노파크로 / 롯데마트 송도점~미추홀공원 북측사거리)	0.82km
3	인천광역시 관내(하모니로 / 미추홀공원 북측사거리~송도컨벤시아 사거리)	0.43km
4	인천광역시 관내(센트럴로 / 송도컨벤시아 사거리~송도IBS빌딩앞 사거리)	1.5km
5	인천광역시 관내(아트센터대로 / 송도IBS빌딩앞 사거리~G타워 앞 사거리)	0.05km
	계	3.65km



-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 ㅇ 지정목적
 - 송도 경제자유구역 일원에 새로운 교통수단을 공급하여 정주여건 개선
 - 기 구축된 자율주행 인프라를 활용한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
 - 신규 교통수단 공급을 통한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
 - 자율주행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 선도지역 도약
- 지정기간 : '23. 12. 5.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 ㅇ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 ㅇ 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서비스
 - 아트센터대로 → 센트럴로 → 하모니로 → 테크노파크로 → 인천타워대로를 순환하는 도심순환형 자율주행 서비스
 -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내 및 정류장 표지판, 필요 시 도로노면표시 등
 - 시범운행지구 안전 관리를 위한 분야별 계획 수립
 - ㅇ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
- · 허가조건 및 특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
- 기타 여객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허가 신청 절차, 안전관리 규칙 등 본 시험운행지구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고시·공지 예정
- · 허가대수의 상한 : 총 4대('2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도심순환형 자율주행셔틀	도심에서 정해진 노선을 따라 순환하여 운행하는 셔틀 서비스	4대

- * 세부사항은 유상운송특례 발급 전 사전협의를 통해 조율
-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홈페이지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032-440-4583)

인천 영종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 명칭 : 인천 영종(하늘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관할 시·도 : 인천광역시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 또는 연장
1	인천광역시 관내(영종대로 / 은골 사거리~중산동 1999)	9.7km
	계	



-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 ㅇ 지정목적
 - 영종 경제자유구역 일원에 새로운 교통수단을 공급하여 정주여건 개선
 - 신규 교통수단 공급을 통한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
 - 영종도 내 주거지역과 지하철 연계를 위한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
 - 자율주행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 선도지역 도약
- 지정기간 : '23. 12. 5.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 ㅇ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 ㅇ 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서비스
 - 영종 내 주거지역과 지하철 교통 연계를 위한 영종대로 고정노선 자율주행 서비스
 -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내 및 정류장 표지판, 필요 시 도로노면표시 등
 - 시범운행지구 안전 관리를 위한 분야별 계획 수립
 - ㅇ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
- · 허가조건 및 특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
- 기타 여객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허가 신청 절차, 안전관리 규칙 등 본 시험운행지구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고시·공지 예정
- · 허가대수의 상한 : 총 4대('2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고정노선형 자율주행셔틀	도심에서 정해진 노선을 따라 운행하는 셔틀 서비스	4대

- * 세부사항은 유상운송특례 발급 전 사전협의를 통해 조율
-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홈페이지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032-440-4583)

인천국제공항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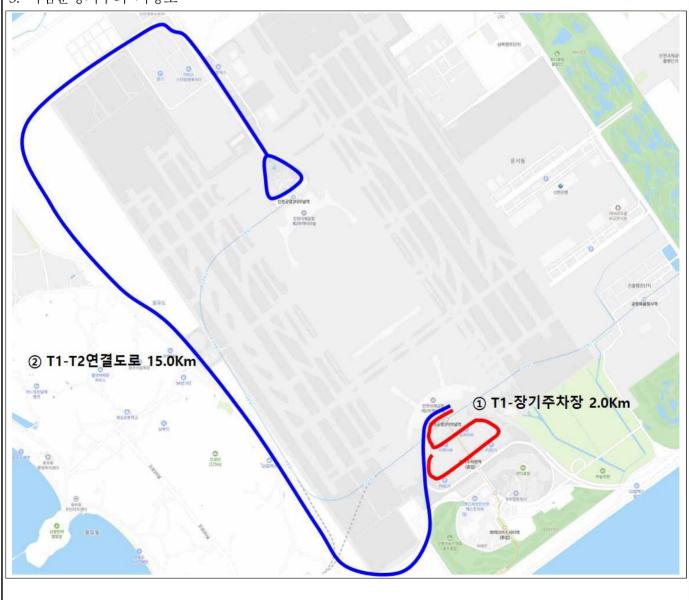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인천국제공항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관할 시·도 : 인천광역시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 또는 연장
1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 제1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	2.0km
2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 제2여객터미널)	15.0km
	계	17.0km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 ㅇ 지정목적
 - 국가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 스마트 신기술인 자율주행을 접목하여 스마트 리딩공항의 위상 제고
 - 장기적으로 공항전역의 기존 버스셔틀 노선을 단계적으로 무인 자율주행자동차로 전환 계획
 - 국토부와 인천광역시의 자율주행차 정책에 맞춰 공기업으로서 국민이자 여객에게 감동 제공
- 지정기간 : '23. 12. 5.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 ㅇ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 ㅇ 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서비스
 - 인천국제공항 T1 장기주차장 ↔ T1을 순환하는 자율주행 서비스
 - 인천국제공항 T1 ↔ T2 연결도로를 순환하는 자율주행 서비스
 -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수안전운전자, 보험가입 등 제반사항 준수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관리자로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고시 즉각 대응절차 및 사고비상대응 체계도를 기수립
 -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관리는 인천광역시와 협의를 통해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
 - ㅇ 여객의 무상운송계획에 관한 사항
 - · 제1여객터미널↔T1 장기주차장, T1↔T2 연결도로 노선 자율주행셔틀 무상운송 계획
 - · 인천국제공항공사는『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련 법률』,『자율주행자동 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및 『도로교통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 범운행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
-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홈페이지 : 인천국제공항공사(www.airport.kr)
 -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032-440-4583), 인천국제공항공사 스마트공항팀(032-741-2501)

울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 명칭 : 울산(울산테크노산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관할 시·도 : 울산광역시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 또는 연장
1	테크노산업로 55번길(남창로입구 사거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삼거리)	1.2km
2	테크노산업로(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삼거리~산학융합지구 사거리)	0.3km
3	테크노산업로 &2번길(산학융합지구 사거리~호반베르디움 사거리)	0.2km
4	테크노산업로 44번길(호반베르디움 사거리~호반베르디움 삼거리)	0.1km
	계	1.8km



-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 ㅇ 지정목적
 - 시범운행지구 내 대학, 혁신기관, 기업들이 집적화된 구역에 노선을 설정하여 대중교통의 불편함 해소를 위한 서비스 제공
 - 내연기관 중심의 부품기업으로 구성된 울산지역 자동차 산업계의 자율주행자동차 기술확보를 통한 산업전환 수요 대응 필요

- 지정기간 : '23. 12. 5.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 ㅇ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 ㅇ 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서비스
 - 울산테크노산단 일대를 운행하는 도심순환형 자율주행 서비스
 -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시범운행지구 내 교통신호 및 기타 안전정보 제공
 - 신호정보·안전정보 등 제공을 위한 C-ITS 인프라 구축
 - 운행노선에 대한 임시정류장 또는 관련 도로 교통시설 설치
 -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성
 - 시범운행지구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운영
 - ㅇ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
 - · 허가조건 및 특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기타 여객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허가 신청 절차, 안전관리 규칙 등 본 시험운행지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고시·공지 예정
 - · 허가대수의 상한 : 총 2대('24년 1대, '25년부터 2대로 확대)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도심순환형 자율주행셔틀	도심에서 정해진 노선을 따라 순환하여 운행하는 셔틀 서비스	2대

- * 세부사항은 유상운송특례 발급 전 사전협의를 통해 조율
-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홈페이지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www.ulsan.go.kr)
 -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주력산업과(052-229-2864)

대구 동성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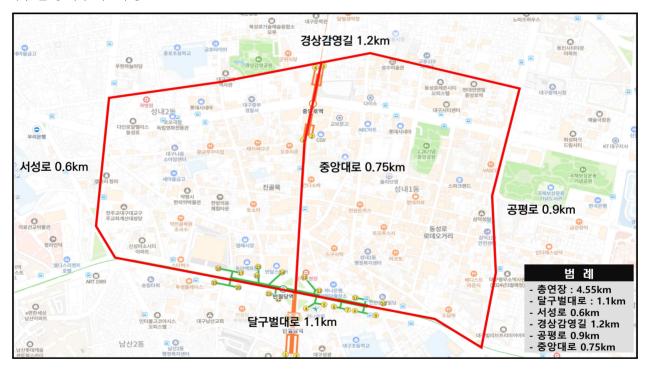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 명칭 : 대구 동성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관할 시·도 : 대구광역시

.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 또는 연장
1	대구 중구 관내(달구벌대로 / 봉산육거리~계산오거리)	1.1km
2	대구 중구 관내(서성로 / 계산오거리~서성로 네거리)	0.6km
3	대구 중구 관내(경상감영길 / 서성로 네거리~ 시청 네거리)	1.2km
4	대구 중구 관내(공평로 / 시청 네거리~봉산육거리)	0.9km
5	대구 중구 관내(중앙대로 / 중앙대로 네거리~반월당 사거리)	0.75km
	계	4.55km



-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 ㅇ 지정목적
 - 대구 동성로에 새로운 교통수단(순환셔틀)을 공급하여 시민·관광객의 이동 편의성 및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개선
 -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로 이용자의 실시간 수요에 따라 운행, 편리함과 대기시간 최소화 등으로 모빌리티 혁신 추진
 - 자율주행자동차 실증도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자율주행차 지원 사업 추진
- 지정기간 : '23. 12. 5.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 ㅇ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 ㅇ 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서비스
 - 달구벌대로 → 서성로 → 경상감영길 → 공평로를 순환하는 도심순환형 자율주행 서비스
 - 달구벌대로 → 서성로 → 경상감영길 → 중앙대로를 순환하는 도심순환형 자율주행 서비스
 - 달구벌대로 → 중앙대로 → 경상감영길 → 공평로를 순환하는 도심순환형 자율주행 서비스
 - ㅇ 시범은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 시범은행 지원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내 및 정류장 표지판, 필요시 도로노면표시 등
 -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의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대구광역시 유관부서, 지방경찰청, 대구시설공단, 연구기관, 한정 운수 사업자 등으로 이루어진 '대구광역시 시범 운행지구 협의회' 운영
 -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 및 지속 업데이트 진행
 - ㅇ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

ㆍ 허가조건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 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름
- 운행 예정 구역에 대한 자율주행차량이 운행가능영역(Operation Design Domain, ODD) 범위를 명확하게 알려야 하며, ODD Exit 상황 발생시 대응 방안 수립이 되어 있어야함
- 도로별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운행이 가능해야 함
- ㆍ 허가대수의 상한 : 총 3대

구 분	주요 내용	
수요 응답형 여객운송서비스	중구 달구벌대로 ~ 서성로 ~ 경상감영길 ~ 중앙대로 ~ 공평로, 동성로 일대를 운행하는 도심순환형 자율주행 서비스	3대

- * 세부사항은 유상운송특례 발급 전 사전협의를 통해 조율
- · 기타 운영계획 상 주민 및 특례신청자 등이 알아야 할 사항
- 자율주행차량운행간 비상상황 발생시 즉각 대응하고 유관부서 및 '대구광역시 시범 운행지 구 협의회'에 관련 사항을 제출 필수
-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ㅇ 홈페이지 : 대구광역시(https://www.daegu.go.kr) ⇨ 정보공개 ⇨ 알림정보 ⇨ 고시공고
-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미래모빌리티과(053-803-6382)

경북 경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 명칭 : 경북 경주(보문관광단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관할 시·도 : 경상북도 경주시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 또는 연장
1	경주시 보문로 / (보문교삼거리~천군네거리)	5.7km
2	경주시 경감로 / (천군네거리~보문교삼거리)	3.7km
3	경주시 엑스포로 / (힐튼호텔네거리~화백컨벤션입구)	0.3km
	계	9.7km



-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 ㅇ 지정목적
 - 관광과 첨단 교통이 결합된 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형태의 관광 문화 시대 개척
 - 지방 기업들의 첨단 기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지역 균형발전 실현
 - 미래 모빌리티를 활용한 보문관광단지 내 교통현안 문제 해결
- 지정기간 : '23. 12. 5.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 ㅇ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 ㅇ 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서비스
 - 보문호(보문로~경감로)를 시계방향으로 순환하는 고정 노선형 셔틀버스 운행
 -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경주시 교통정보센터 내 자율주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운행 지원
 - 경상북도, 경주 경찰서, 경주시(교통행정과,도로과 등)로 구성된 시범운행지구 운영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안전관리체계 수립
 - 전용차고지, 노면 표시 및 안내 표지판 등 도로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
 - 안전운행 매뉴얼 제작, 상시점검 체계 구축
 - 신호개방, C-ITS 등 자율협력주행 인프라 구축
 - ㅇ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
- · 허가조건 및 특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
- 기타 여객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허가 신청 절차, 안전관리 규칙 등 본 시험운행지구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고시·공지 예정
- · 허가대수의 상한 : 총 2대('2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고정 노선형 자율주행셔틀	보문호를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순환하는 고정 노선형 자율주행 셔틀버스	2대

- * 세부사항은 유상운송특례 발급 전 사전협의를 통해 조율
-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홈페이지 : 경상북도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 문 의 처 : 경상북도 교통정책과(054-880-2698), 경주시 교통행정과 교통정보센터(054-779-6846)

경남 사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경남 사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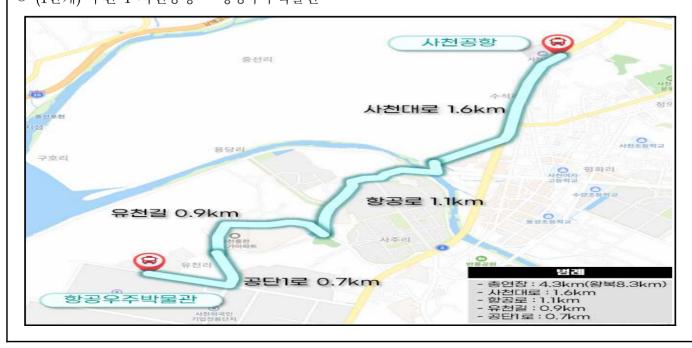
○ 관할 시·도 : 경상남도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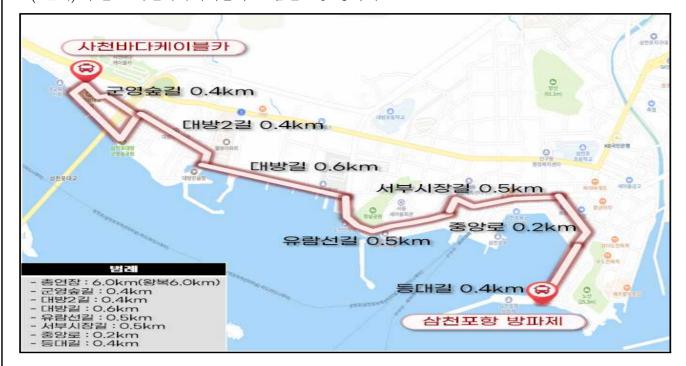
○ (1단계) 구간 1 사천공항 ~ 항공우주박물관

구분	위치	면적 또는 연장
1	사천대로 / 사천공항 ~ 용당2교	1.6km
2	항공로(1) / 용당2교 ~ 유천소류지	1.1km
3	항공로(2) / 유천소류지 ~ 에르가APT 앞 회전교차로	0.9km
4	공단1로 / 에르가APT 앞 회전교차로 ~ 항공우주박물관	0.7km
	소 계(1단계 : 구간 1 사천공항 ~ 항공우주박물관)	4.3km
1	대방2길(1) / 사천바다케이블카 ~ 군영숲길 교차로	0.4km
2	대방2길(2) / 군영숲길 교차로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0.4km
3	대방길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삼천포유람선	0.6km
4	유람선길 / 삼천포유람선 ~ 서부시장 삼거리	0.5km
5	서부시장길 / 서부시장 삼거리 ~ 더원호텔 앞 오거리	0.5km
6	노산공원길 / 더원호텔 앞 오거리 ~ 심천포항 공영주치장	0.2km
7	등대길 / 삼천포항 공영주차장 ~삼천포항 방파제	0.4km
	소 계(2단계: 구간 2 사천바다케이블카 ~ 삼천포항 방파제)	3.0km
	총 계	7.3km

-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 (1단계) 구간 1 사천공항 ~ 항공우주박물관



○ (2단계) 구간 2 사천바다케이블카 ~ 삼천포항 방파제



-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 ㅇ 지정목적
 - 우주항공청 개청 대비 도시 미래 경쟁력 강화
 - 우주항공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신성장돌역 산업 육성 및 발굴
 - 사천특화형 스마트도시를 위한 안전한 미래 모빌리티 실증 환경 구축
 - 사천공항 이용객 교통편의 증진과 주요 해양관광지 교통혼잡 해소
- 지정기간 : '23, 12, 5.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 ㅇ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 ㅇ 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서비스
 - (1단계) 사천공항 ↔ 항공우주박물관을 순환하는 대중교통연계형 자율주행 서비스
 - (2단계) 사천바다케이블카 ↔ 삼천포항 방파제를 순환하는 관광연계형 자율주행 서비스
 -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내를 위한 노면표시, 안전표지파 등 안전시설물 설치
 - 자율주행서비스를 위한 전용 정류장, 차고지, 전기차 충전소 등 제공
 -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성 및 유지

- 시범운행지구 '안전관리 위원회' 조직 구성 및 운영
- 예비실증사업 추진을 통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 ㅇ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
 - · 허가조건 및 특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
 - 기타 여객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허가 신청 절차, 안전관리 규칙 등 본 시험운행지구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남도, 사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고시·공지 예정
 - · 허가대수의 상한 : 총 3대('2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구 분	주요내용	비고
노선형(유상운송) - 대중교통연계 자율주행 서비스	정해진 노선을 따라 순환하여 운행하는 자율주행 서비스	1대
노선형(유상운송) - 관광연계 자율주행 서비스	정해진 노선을 따라 순환하여 운행하는 자율주행 서비스	2대

* 세부사항은 유상운송특례 발급 전 사전협의를 통해 조율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홈페이지 : 경상남도(www.gyeongnam.go.kr), 사천시(www.sacheon.go.kr)

○ 문 의 처 : 경상남도 교통정책과(055-211-4134), 사천시 우주항공과(055-831-3485)

전남 해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 명칭 : 전남 해남(솔라시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관할 시·도 : 전라남도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 또는 연장
1	솔라시도 (구성지구) 관내(군도21호선(1) / 산이정원입구 교차로~구성교회 교차로)	2.1km
2	솔라시도 (구성지구) 관내(동서3길(2) / 구성교회 교차로~솔라시도CC 출구 교차로)	0.4km
3	솔라시도 (구성지구) 관내(솔라시도CC 내부도로(3) / 솔라시도CC 입구 교차로~솔라시도CC 출구 교차로)	0.9km
4	솔라시도 (구성지구) 관내(동서대로(4) / 산이정원 교차로~솔라시도CC 입구 교차로)	2.0km
5	솔라시도 (구성지구) 관내(동서1길(5) / 산이정원 교차로~산이정원 주차장 입구)	0.4km
6	솔라시도 (구성지구) 관내(동서대로(6) / 솔라시도CC 출구교차로~데이터센터 교차로)	2.4km
	계	8.2km



-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 ㅇ 지정목적
 -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새로운 교통수단 제공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교통불편 해소

-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자율주행 모빌리티가 구현되는 솔라시도만의 스마트시티의 표준 모델 실현
- 해남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스마트시티 확산 기여
- 지정기간 : '23. 12. 5.부터 지정 해제 시까지
-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 ㅇ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 ㅇ 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서비스
 - 군도21호선(1) → 동서3길(2) → 솔라시도CC 내부도로(3) → 동서대로(4)를 고정노선으로 순환하는 레저형(Leisure Type) 자율주행 서비스
 - 동서1길(5) → 동서대로(4) → 솔라시도CC 내부도로(3) → 동서대로(6)를 고정노선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형(Public Transport Type)의 자율주행 서비스
 -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내 및 정류장 표지판, 자율주행차 전용도로 구축
 - 자율주행차 전용 차고지, 충전시설 및 지원 인프라(스마트 IoT), 관제센터 구축
 -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 해남군과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민간 운영사업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보험사, 견인업체 등을 포함하는 비상연락체계 구성
 - 관계기관(경찰청, 소방서, 응급의료센터)이 참여한 교통사고 사전 예방대책 및 사고발생시 신고·대응 절차를 마련하여 자율주행서비스 안전강화

구 분	운송 방식	주요 내용	비고
레저타입 (Leisure Type) 순환노선형	무상운송	관광지(산이정원)과 생활권(커뮤니티센터)의 정해진 노선을 따라 순환하여 운행하는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4대
대중교통 타입 (Public Transport Type) 고정 노선형		도시 내 간선도로(동서대로)를 정해진 노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3대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홈페이지 : 전라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

○ 문 의 처 : 전라남도 신성장산업과(061-286-3942)

경기 판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 명칭 :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관할 시·도 : 경기도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 또는 연장
1	성남시 수정구 일부 구역 (판교 제2테크노밸리 일부 구역)	0.18km ² , 2.16km
2	성남시 분당구 일부 구역 (판교 제1테크노밸리 일부 구역)	1.16km ²
3	대왕판교로 일부 도로(구역 간 연결)	0.53km
	1.34km ² , 2.69km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 ㅇ 변경목적
 - 판교 제2테크노밸리 2구역 자율주행 인프라구축 완료 및 1~2구역 연결교량 개통됨에 따라, 자율주행 기술을 통한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 근로자 및 거주자의 이동성·편의성 향상 도모
 - 시범운행지구 운행가능영역(ODD) 확대 운영을 통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도민 수용성을 높이고 자율 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대중화를 통한 편의성 증진 도모
- 지정기간 : '23. 12. 5.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 ㅇ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 ㅇ 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서비스
 - 판교2TV 2구역 → 경기기업성장센터 → 판교역을 순환하는 자율주행 판타G버스 대중교통 서비스
 -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국토부 고시 제 2022-348호 참조)
 - ㅇ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

ㆍ 허가조건

- 운행 예정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가능영역(Operation Design Domain, ODD)이 본 시범운 행지구의 운행구간 및 운행 형태에 적합해야 함
- 60km/h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며 운행할 수 있어야 함
-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이 상시 탑승해야함
- 경기도가 제공하는 V2X 단말기를 사용하여야 함
- 고객 탑승(예약) 관리, 배차 및 차량 운행관리 등 서비스 필요 제반사항을 통합 관리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경기도자율주행센터에서 요청하는 관제. 데이터 연계 등을 적극 수용할 수 있어야 함
- 경기도의 버스, 택시 등 고려한 적정 요금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 특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악천후 및 비상상황 등 자율주행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거나 주행 상황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경우 안전요원이 개입하여 수동으로 운전해야 함
 - 자율주행자동차 및 시범운행지구 관련 법령, 행정규칙, 경기도 조례를 준수해야 함
 - 여객에게 운수사업자, 요금, 노선 등의 정보를 알려야 하며, 여객이 요청할 경우 요금 결제내역을 제공해야 함
 -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준수해야 함
 - 경기도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 영업장 출입을 허용하고 자동차 운행실적 등 한정운수 면허와 관련 된 자료(시범운행지구 성과보고서 작성시 필요 자료 등) 요청 시 즉시 제출해야 함
- · 허가대수의 상한 : 총 30대
-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홈페이지 : 경기도청(www.gg.go.kr)
 - 문 의 처 :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자율주행첨단단지팀(031-8008-5721)

강릉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강릉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관할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연장
1	도심~관광지 연계노선(강릉역~강릉고속터미널~오죽헌)	9.8km
2	뮤지엄셔틀노선(올림픽뮤지엄~초당(강문))	3km
3	해안경관 운행노선(오죽헌~초당(강문)~안목해변)	10km
4	마실버스 운행노선(연곡면사무소~삼산보건소 연결노선)	13km
5	시티투어버스 운행노선(인목해변-경포해변-시근진해변-순긋해변-시천진해변-영진해반-주문진해변)	17.7km
	계	53.5km



-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국토부 고시 제2022-348호 참조)
 - ㅇ 지정목적
 - 자율주행자동차 실증도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자율주행차 지원 사업 추진
 - 기 추진된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의 결과물을 시범운행지구에서 안전성·경제성을 검증하여 조기 상용화를 유도하고, 도심과 관광지 연계 교통문제 해결에 기여
 - 지정기간 : '23. 12. 5.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 아래사항 변경(국토부 고시 제2022-348호 참조)
 - ㅇ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 시범운행지구 내 도입예정 서비스 범위·구간
 - 강릉역→교동철교→강릉고속버스터미널→솔올공연장→풋살경기장옆→오죽헌→올림픽뮤지엄을
 순환하는 도심-관광지 연계노선,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
 - 올림픽뮤지엄→녹색도시체험센터→허균허난설헌기념공원→초당(강문)을 왕복 운행하는 B형 자율주행차량을 이용한 뮤지엄 셔틀 노선
 - 오죽헌→선교장→경포가시연습지→홍장암→(스카이베이호텔)→경포호수광장→초당(강문)→세인트존 스호텔→송정해변→안목해변을 왕복 운행하는 역사문화 해안경관 노선,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
 - 연곡면사무소 → 삼산보건을 왕복하는 벽지노선 운행 "자율주행 마실버스 서비스"
 - 안목해변 → 주문진해변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 "자율주행 시티버스 서비스"
 -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에 관한 사항
 -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차고지 제공
 - 신호정보·안전정보 등 제공을 위한 C-ITS 인프라 구축(현재 일부 구간 구축 완료)
 - 자율주행자동차 정류소 표지판 및 정차면 설치
 - 안전운행 준수 지침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규칙 마련
 - 자율주행자동차 활용 여객운송 사업에 대해 운영 예산 마련 활동을 통한 사업지원
 - ㅇ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ㆍ 허가조건 및 특례를 받은 자 준수 사항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름
 - · 허가대수의 상한: 총 15대

구 분	연장(km)	운행경로	대수
도심-관광지 연계노선	9.8	강릉역, 고속버스터미널, 오죽헌 (9.8km, 순환)	
뮤지엄셔틀노선	3	올림픽뮤지엄, 초당(강문) (3km, 왕복)	
역사문화-해양경관 노선	10	오죽헌, 초당(강문),안목해변 (10km, 왕복)	1 <i>E</i> F II
자율주행 마실버스	13	연곡면사무소, 삼산보건소를 왕복하는 벽지노선 수요응답형 자율주행버스 서비스	15대
 자율주행 시티버스	17.7	안목해변, 주문진해변을 왕복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버스 서비스(해양경관노선 중복구간 5.3km 제외)	
 합 계	53.5	-	

-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ㅇ 홈페이지 : 강릉시청(https://www.gn.go.kr/) ⇨ 정보공개 ⇨ 알림정보 ⇨ 고시공고
- 문 의 처 : 강원도청 교통과(033-249-3605), 강릉시청 ITS추진과(033-640-5660)

경북 도청 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경북 도청 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관할 시·도 : 경상북도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 또는 연장
1	경북도청 신도시 일원(예천복합커뮤니티센터 ~ 하회마을)	11.5km
	계	11.5km



- * 붉은색 : 5차지정('23.6.27), 초록색 : 6차지정('23.12.5)
-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국토부 고시 제2023-342호 참조)
- ㅇ 지정목적
 - 도청 신도시 대중교통 공존형 도심 자율주행으로 대중교통 대기시간 감소 등 교통체계 개선
 - 주요 관광지(하회마을), 벽지노선 등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제고으로 이동성 강화
 -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조례 제정으로 도심 자율주행 기반 산업 육성 지원 및 시민 체감형 서비스 제공
- 지정기간 : '23. 12. 5.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 ㅇ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 ㅇ 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서비스
 - 예천복합커뮤니티센터 ~ 경북도청 구간 도심도로 대중교통 공존형 자율주행 셔틀버스 서비스
 - 경북도청 ~ 하회마을 구간 대중교통 공존형 자율주행 셔틀버스 서비스
-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 및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고지, 전기차 충전소 및 지원시설 지원 및 관제센터 운영으로 실시간 대응
 - 자율주행 관련 국가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C-ITS 등 주행관련 인프라 구축 추진
 - 기타 경상북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로 정하는 지원 사항
 -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해 경상북도, 관계기관(안동시, 예천군, 경북경찰청 등) 등 비상연락체계 구성
 - 경상북도, 경북경찰청, 안동시, 예천군, 교통·도로관리 부서 및 유관기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시범운행지구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안전강화
- ㅇ 시범운행지구 지원 방안
 - '경상북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추진('24. 上) 통해 시범운행지 구에서 실증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자율주행차량 운영비 등 예산 확보·지원
- ㅇ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
 - 허가조건
 - 특례를 신청하는 자는 사전에 경상북도 및 이해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운행횟수, 운행시간 이용 요금 등에 대해 협의 후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여객운송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운행 중 기상 악화 등 비상 상황 시 대응 요령을 포함한 자체 대응 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함
 - 카메라 또는 기타 장치를 활용하여 신호교차로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음을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위한 안전운행요건 확인 시 검증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이어야 함
 - · 특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안전관리요원이 상시 탑승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수동으로 개입하여 운전해야 함
 - 월별 분기별 운행실적 및 정기 성과보고서 등 기타 경상북도의 요청 사항에 대해 협조해야 함
- · 허가대수의 상한 : 총2대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노선형 셔틀서비스	정해진 노선을 따라 순환하는 셔틀 서비스	2대

-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홈페이지 : 경상북도(www.gb.go.kr)
 - 문 의 처 : 경상북도 교통정책과(054-880-2698)

제주 자율주행차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 명칭 : 제주(제주시청-서귀포1청사) 자율주행차동차 시범운행지구

○ 관할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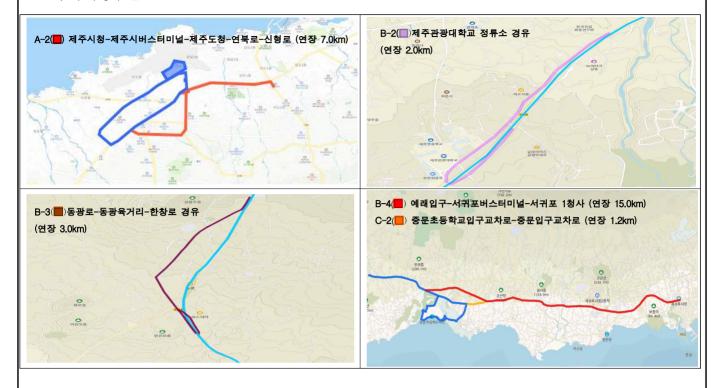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및 구간	면적	연장
A-1	제주국제공항 일원, 제주국제공항-노형로 시내구간	$0.117 \mathrm{km^2}$	8.31km
В-1	평화로-한창로-일주서로		32.27km
C-1	천제연로, 중문관광단지	2.109km²	1.02km
A-2	제주시청-제주시버스터미널-제주도청-연북로-신형로		7.0km
В-2	제주관광대학교 정류소 경유		2.0km
В-3	동광로-동광육거리-한창로		3.0km
В-4	예래입구-서귀포버스터미널-서귀포 1청사		15.0km
C-2	중문초등학교입구교차로-중문입구교차로		1.2km
	계	2.226km²	69.8km

* A-1, B-1, C-1 : 1차지정('20.12.8), A-2, B-2, B-3, B-4, C-2 : 6차지정('23.12.5)



ㅇ 추가지정구간



-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 목적 일부 변경(국토부 고시 제2020-904호 참조)
 - ㅇ 지정목적
 - 국내외 관광객 대상 자율주행 기반 이동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에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지역 교통현안 해결에 기여
 - 제주의 다양한 도로·기후·교통 환경에서의 자율주행 기술 실증 지원
 -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 인프라의 활용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지원하여 스마트 교통시스템 확산을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 수행
 - 지정기간 : '23. 12.5.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 서비스, 지원, 허가조건 등 일부 변경(국토부 고시 제2020-904호 참조)
- 시범운행지구 내 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자동차 활용 서비스
 - 제주시청과 서귀포제1청사를 기·종점으로 하여 버스 정류소를 정차 지점으로 활용하는 자율주행차 여객 노선 서비스
- ㅇ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신호정보·교통정보 등을 C-ITS 인프라를 통해 제공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내 표지판 등 노면표시 등 설치
- 안전운행 준수 지침 등 안전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안전운행 관련 규정 마련
- ㅇ 시범운행지구 지원 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통해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 주행 서비스 운영비 등 예산 확보·지원
- ㅇ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허가조건

- 특례 신청하는 자는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반영하여 여객운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운행 중 기상학화 등 비상시 대응 요령도 포함해야 함
- 여객운송계획,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기술 등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 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
- 운행 예정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가능영역(Operation Design Domain, ODD)이 운행 구간 및 운행 형태에 적합해야 함
- 도로별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운행이 가능해야 함
- 특례 신청자의 영업 상 기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주행 운행 실적 등 정보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공
- · 허가대수의 상한 대수: 총 5대 이하
- · 운행구간
- 제주시청 ~ 서귀포1청사까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구간(면적 2.226km², 연장 69.8km)
 - * 세부사항은 유상운송특례 발급 전 사전협의를 통해 조율
- · 특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름
-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석에 상시 안전요원이 탑승해야 함
- 악천후 및 비상상황 등 발생에 따라 자율주행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거나 상황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경우 안전요원이 개입하여 수동으로 운전해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의 수시 점검에 응해야 함
-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홈페이지 : 제주특별자치도(https://www.jeju.go.kr)
 -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미래모빌리티과(064-710-2652)

충청권 광역교통망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곾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충청권 광역교통망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관할 시·도 :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	연장
1	오송역~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반석역 BRT 구간		32.2km
2	세종 내부순환 BRT도로 우측		12km
3	오송역~청주공항		26km
4	4 반석역~카이스트		17.1km
	계		87.3km



-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국토부 고시 제2022-678호 참조)
- ㅇ 지정목적
 - 광역 지자체 간 장거리 여객운송 서비스에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자율 주행 기반 광역교통체계를 선도하고 충청권 미래차 클러스터 조성
 - 충청권 지역 접근성을 개선하고, 노선 다변화를 통한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여 국가적인 기술 효과 달성 및 국가적 자율주행 광역교통 시대 완성에 기여
- 지정기간 : '23. 12. 5.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 아래사항 변경(국토부 고시 제2022-678호 참조)
 - ㅇ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같은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같은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 시범운행지구 내 도입예정 서비스 범위·구간
 - 오송역~국책연구단지(내부순환 BRT 우축)~반석역을 운행하는 자율주행 서비스
 - 청주공항~오송역~세종터미널을 운행하는 자율주행 서비스
 - 세종터미널~반석역~카이스트를 운행하는 자율주행 서비스
 -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차고지, 전기차 충전소, 정비시설 제공(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일원 등, 제공방법 등은 관할 시·도가 별도 공고)
 - 「자율주행자동차법」제19조에 따른 책임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음(관할 시·도의 예산범위 내, 구체적인 지원 규모 및 지원 방식은 관할 시·도가 별도 공고)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내 표지판, 필요시 도로노면표시, 오송역 버스환승센터 내부 및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전용승강장 설치
 -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통해 자율주행 교통, 날씨, 행사 등의 정보 수집·제공
 - 시범운행지구 안전매뉴얼 마련(관할 시·도가 별도 고시)
 - ㅇ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ㆍ 허가조건
 -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에 대한 지휘·감독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증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운행 예정 구역에 대한 자율주행차량이 운행가능영역(Operation Design Domain, ODD) 범위를 명확하게 알려야 하며, ODD Exit 상황 발생시 대응 방안 수립이 되어 있어야함
 - 도로별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운행이 가능해야 함

- · 허가대수의 상한 : 총 10대 이하
- · 특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시범운행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에서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는 자가 항상 탑승하여야 함
- 각 종점에서는 운전자가 직접 운행하여야 함
-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속도로 운행하여야 함
- 관할 시·도의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운행 빈도 및 요금을 설정하여야 함
- 기존 버스 배차시간 등을 고려한 관할 시·도의 운행 대수·시간 조정에 따라야 함
- 기상·도로상황에 따른 관할 시·도의 운행 조정 또는 제한에 따라야 함
- 일반 차량과의 접촉 우려가 있는 시범운행 시 운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별도의 안전 요원을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함
- 충청권 광역교통망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전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함
- · 기타 운영계획 상 주민 및 특례신청자 등이 알아야 할 사항(추가)
- 운행 중 비상상황 발생시 즉각 대응하고 관할 시·도 및 유관부서에 관련 사항을 즉시 공유 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 제출 필수

ㅇ 기타

-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허가시 운행구간·운임 등이 포함된 여객운송계획은 관할 시·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예정
- 한전운수면허 발급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할 시·도가 별도 공고 예정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 문의처 : 경제정책과(044-300-4034)
-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 / 문의처 : 산업육성과(043-220-8474)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 문의처 : 교통정책과(042-270-5728)

서울 청와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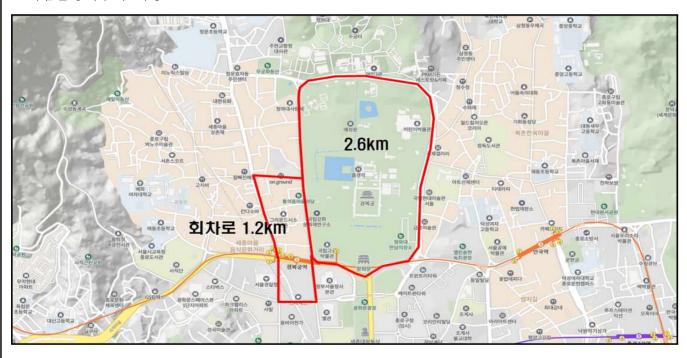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 명칭 : 서울 청와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관할 시·도 : 서울특별시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 또는 연장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복궁 및 청와대 일원(청와대로~사직로~삼청로~효자로)	2.6km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차로(자하문로~사직로~새문안로)	1.2km
	계	3.8km



-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 변경 없음(국토부 고시 제2023-342호 참조)
- 5. 시범운행지구의 운행계획의 주요내용 : 아래사항 변경(국토부 고시 제2023-342호 참조)
- ㅇ 여객의 무상운송계획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무상)	청와대-경복궁 순환 노선을 운행	2대

- **※ 정정사유** : 5차지정('23.6.27) 오기 내용 정정(유상운송계획 → 무상운송계획)
-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서울특별시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제정 이후)
- 관련 고시·공고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www.seoul.go.kr/news)
- 문의처 : 서울특별시 미래첨단교통과(02-2133-4963)

서울 여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서울 여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관할 시·도 : 서울특별시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 또는 연장
1	서울특별시 국회 서비스 운영 노선(여의서로)	1.1km
2	서울특별시 국회 서비스 운영 노선(국회내부)	1.9km
3	서울특별시 국회둔치주차장내 도로	0.1km
	계	3.1km



-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 변경 없음(국토부 고시 제2023-342호 참조)
- 5. 시범운행지구의 운행계획의 주요내용 : 아래사항 변경(국토부 고시 제2023-342호 참조)
- ㅇ 여객의 무상운송계획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무상)	둔치주차장-국회 내부 순환 노선을 운행	2대

- **※ 정정사유** : 5차지정('23.6.27) 오기 내용 정정(유상운송계획 → 무상운송계획)
-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서울특별시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제정 이후)
- 관련 고시·공고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www.seoul.go.kr/news)
- 문의처 : 서울특별시 미래첨단교통과(02-2133-4963)

충남 내포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 명칭 : 충남 내포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관할 시·도 : 충청남도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 또는 연장	
1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주변 홍보 및탑승 체험 구간	2.5km	
2	내포신도시 내 방범순찰 구간	7km	
3	내포신도시 내 주정차단속 구간	5km	
	계	14.5km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 변경 없음(국토부 고시 제2023-342호 참조)
- 5. 시범운행지구의 운행계획의 주요내용 : 아래사항 변경(국토부 고시 제2023-342호 참조)
- ㅇ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무상 서버스	서비스가 안정화 되기까지 기한을 정하여 무상으로 시	OEII
(자율차 승용형 1대, 승합형 1대)	범서비스를 할 수 있는 대수의 상한	2대

**** 정정사유** : 5차지정('23.6.27) 오기 내용 정정(허가상한)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문 의 처 : 충남도청 도로철도항공과 미래도로항공팀(041-635-4695)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 명칭 :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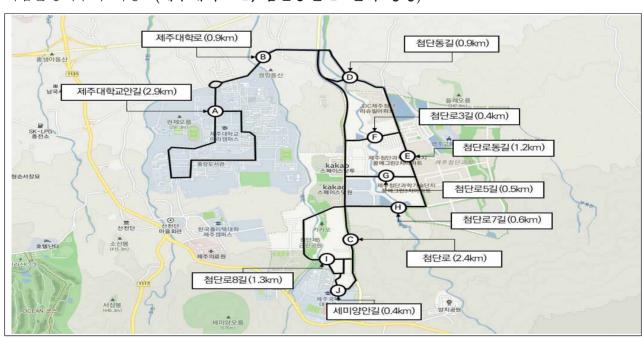
○ 관할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연장 또는 면적
А	제주대학교안길 (제주대정문(입구)~제주대정문(출구))	2.9km
В	제주대학로 (제주대정문~월평1교앞교차로)	0.9km
С	첨단로 (월평1교앞교차로~세미양빌딩 입구)	2.4km
D	첨단동길(월평1교앞교차로~JDC행복주택, 첨단로 진입부~JDC행복주택)	0.9km
Е	첨단로동길 (JDC행복주택~첨단로7길 진입부)	1.2km
F	첨단로3길 (첨단로 진입부~첨단로동길 진입부)	0.4km
G	첨단로5길 (첨단로 진입부~첨단로동길 진입부)	0.5km
Н	첨단로7길 (첨단로 진입부~첨단로동길 진입부)	0.6km
	첨단로8길(첨단로 진입부(북)~첨단로 진입부(남), 첨단5교~세미양빌딩)	1.3km
J	세미양안길 (세미양빌딩 입구~첨단로8길 진입부)	0.4km
	계	11.5 <i>km</i>

* 정정사유 : 5차지정('23.6.27) 오기 내용 정정(D길이 정정)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제주대학로 B, 첨단동길 D 길이 정정)



-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 변경 없음(국토부 고시 제2023-342호 참조)
- 5. 시범운행지구의 운행계획의 주요내용 : 변경 없음(국토부 고시 제2023-342호 참조)
-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홈페이지 : 제주특별자치도청 (www.jeju.go.kr)

○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미래모빌리티과 자율주행산업팀(064-710-2652)

대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대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관할 시·도 : 대구광역시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총연장정정)

구분	위치	면적	연장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삼덕·시지·노변동 일원(수성알파시티)	2.2 ^{km²}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유가읍 일원(대구테크노폴리스)	7.7 ^{km²}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구지면 일원(대구국가산업단지)	9.4 ^{km²}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일원(대구테크노폴리스-대구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		2.6km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설화명곡역~테크노폴리스로		20.0km
6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수목원~서구 이현동 서대구역		18.2km
	계	19.3 ^{km²}	40.8km

* 1~4번 : 1차지정('20.12.8), 5번 : 3차지정('22.6.24), 6번 : 5차지정('23.6.27)



-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 변경 없음(국토부 고시 제2023-342호 참조)
- 5. 시범운행지구의 운행계획의 주요내용 : 아래사항 변경(국토부 고시 제2023-342호 참조)
- ㅇ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 허가대수의 상한 : 총 20대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마을버스	수성알파시티 도심지 내 순환형 마을버스 유상 운송 서비스	
수요 응답형 여객운송서비스	서구 이곡동 서대구역 ~ 대구수목원 ~ 테크노폴리스로, 테크노폴리스 및 국가산단 도심지 내 승용차 기반의 수요 응답형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연구개발실증	테크노폴리스로~ 수목원 일대 자율주행혁신사업 기술개발실증	

※ 정정사유 : 5차지정('23.6.27) 오기 내용 정정(서비스내용)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홈페이지 : 대구광역시(https://www.daegu.go.kr) ⇨ 정보공개 ⇨ 알림정보 ⇨ 고시공고

○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미래모빌리티과(053-803-6382)

서울 청계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 명칭 : 서울 청계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관할 시·도 : 서울특별시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위치	면적 또는 연장
1	서울특별시 청계천로 서비스 운영 노선(1개 도로 총 6.4km)	6.4km
2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등 회차 노선(8개 도로 총 2.4km)	2.4km
3	서울특별시 삼일대로 등 회차 노선(3개 도로 총 1.1km)	1.1km
		9.9km

* 1~2번 : 3차지정('22.6.24), 3번 : 5차지정('23.6.27)

β.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지형도 정정**)



-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 변경 없음(국토부 고시 제2023-342호 참조)
- 5. 시범운행지구의 운행계획의 주요내용 : 아래사항 변경(국토부 고시 제2023-342호 참조)
- ㅇ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구간 및 범위

구 분	연장(km)	운행경로	대수
운영 노선	6.4	청계광장~청계6가~청계광장(6.4km, 왕복)	5대
회차로(수동주행)	3.5	새문안로, 사직로, 삼일대로 등	_
합 계	9.8	_	_

- **** 정정사유** : 5차지정('23.6.27) 오기 내용 정정(연장)
-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서울특별시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제정 이후)
 - 관련 고시·공고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www.seoul.go.kr/news)
 - 문의처 : 서울특별시 미래첨단교통과(02-2133-4963)